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결 정 문

---

사건번호 : KR-1500125

신 청 인 :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대리인 변리사 김봉규(특허법인 무한)

피신청인 : 함형규(Hyeoung Gyu Ham)

---

###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대리인 : 특허법인 무한(담당변리사 : 김봉규)

피신청인 : 함형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쟁 도메인이름은 "upluscar.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가비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삼평동)  
유스페이스1 B동 4층)에 등록되어 있다.

##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5. 6. 1.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 라고 함)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말소를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5. 6. 4.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5. 6. 4.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5. 6. 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을 위한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5. 6. 9.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5. 6. 29.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5. 6. 29.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5. 7. 8.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남호현 위원을 단독 행정패널위원으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5. 7. 8.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5. 7. 9.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2015.7.17.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말소’ 를 구하는 신청취지에서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 을 구하는 신청취지로 신청취지 변경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면서 2015. 7. 28. 까지 추가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렸지만 피신청인은 답변서 기타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5. 8. 5. 행정패널은 ‘신청인이 ICANN이 제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 제4조 (a)항 (ii)호에 관한 소명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은 위 (ii)호에 관한 소명을 2015. 8. 12.까지 제출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추가 제출 서면에 한하여 2015. 8. 20.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절차명령을 발부하였다. 신청인은 위 절차 명령에 따라 2015. 8. 11. 보충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추가 답변서 제출 기한인 2015. 8. 20.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3. 사실관계

신청인은 개인휴대통신망의 구축, 보유 및 운영과 가입자에 대한 개인휴대통신역무, 음성, 데이터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등 무선통신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6.7.11.에 설립된 회사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한국 특허청에 표장 “Uplus” 와 “유플러스” 에 서비스표 등록을 하여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표장 1: Uplus

서비스표 등록번호: 219178 호

등록일: 2011.10.17.

지정서비스: 제 35 류(상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광고정보 제공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통한광고배포업 등

### 표장 2: 유플러스

서비스표 등록번호: 219196호

등록일: 2011.10.17.

지정서비스: 제35류: 상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광고정보 제공업, 인터넷온라인통신망을 통한광고 배포업 등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현재 한국 특허청에 서비스표등록 제 41-219196 호 “유플러스” 및 제 41-219178 호 “Uplus”, 제 40-1035940 호/제 40-1035034 “U+” 등 다수의 표장(이하 ‘신청인의 표장’)을 출원, 등록 받은 사실, 2013년 및 2014년 각 매출실적은 약 11조원과 약 11조 4천 5백억 원에 이르는 사실, 2012년 8월 이동통신 가입자 1000만을 달성하였고, 2013년 11월에는 기업 고객 부문 4대 통신 서비스 고객만족도 1위로 선정되었으며 2015년 5월

현재 전국 LG U+ 영업점 수가 1928 매장에 이르는 사실, 신청인은 2010 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을 통해 광고활동을 하고 있는바, 2014 년도 한 해 광고비가 8 백 10 억여 원 광고 횟수 약 84,000 여 회에 달하는 사실, 또한 시장 점유율이나 브랜드 파워에 있어서 통신 분야 각 부문별 1 위 내지 3 위를 차지하여 국내 3 대 이동통신사의 하나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신청인의 표장에 관하여 등록 서비스표권자이고 나아가 신청인의 표장은 국내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진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중고차딜러가 중고차정보 등록을 의뢰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해당 정보를 이 사건 분쟁 도메인이름에 연결되는 사이트에 등재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 또는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다. 분쟁 도메인이름은 2014. 10. 21.에 등록되었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A. 신청인

(i) 신청인은 현재 한국 특허청에 “U+” 또는 “유플러스” 와 관련하여 다수의 표장을 출원, 등록 받은 상태이며, 그 중 서비스표등록 제41-219196호 “유플러스” 및 제41-219178호 “Uplus” 는 지정서비스업에 “상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광고정보제공업, 인터넷온라인 통신망을 통한 광고배포업”을 포함하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ii)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신청인의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없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iii) 피신청인은 오로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호 및 등록서비스표와 ① 동일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동일한 사이트명을 등록하고 ③ 네이버 검색광고서비스인 “파워링크”와 다음 광고검색서비스인 “프리미엄 링크”에 각 분쟁 도메인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게재하여 인터넷상의 이용자들을 분쟁 도메인이름의 사이트로 유인하였으며, ④ 해당 사이트 내에서도 신청인의 상호 및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하여금 신청인의 서비스와 혼동을 야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포털사이트에 “유플러스카” 검색 시, 피신청인의 사이트와 신청인의 사업 중 하나인 “U플러스 LTE 스마트카”가 소개되어 이용자들이 신청인의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제4조 (a)(iii), (b)(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갑 제1호증의 1 내지 2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한국 특허청에 다음과 같이 표장 “Uplus”와 “유플러스”에 서비스표를 등록을 하여 두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표장 1: Uplus

서비스표 등록번호: 219178 호

등록일: 2011.10.17.

지정서비스: 제 35 류(상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광고정보 제공업, 인터넷 온라인통신망을 통한광고배포업 등

##### 표장 2: 유플러스

서비스표 등록번호: 219196호

등록일: 2011.10.17.

지정서비스: 제35류: 상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광고정보 제공업, 인터넷온라인통신망을 통한광고 배포업 등

지정서비스: 제 35 류: 상업정보제공업, 상업정보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인터넷을 통한 상업정보제공업, 광고정보 제공업, 인터넷온라인통신망을 통한 광고 배포업 등

그런데 분쟁 도메인 이름 ‘upluscar.com’ 중 영문자 ‘car’ 는 ‘자동차’ 를 의미하여 특히 피신청인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중고 자동차에 관한 정보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볼 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com’ 부분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1 단계 도메인에 해당하여 역시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들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분쟁 도메인 이름의 요부는 ‘uplus’ 이고 이는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 ‘Uplus’와 동일하므로 분쟁 도메인 이름은 신청인의 등록 서비스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참조: Diesel v. LMN, FA 804924 (Nat. Arb. Forum Nov. 7, 2006) (finding <vindiesel.com> to be identical to complainant’s mark because “simply eliminate[ing] the space between terms and add[ing] the generic top-level domain ( “gTLD” ) ‘.com’ [is] insufficient to differentiate the disputed domain name from Complainant’s VIN DIESEL mark under Policy ¶ 4(a)(i)” ).

##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규정 제 4 조(a)항(ii)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런 소극적 사실은 신청인이 완전히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증이 없다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입증을 하면 충분하고(a prima facie case), 신청인이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입증을 할 경우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는 것이다. 참조: Hanna-Barbera Productions, Inc. v. Entertainment Commentaries, NAF Claim No. FA741828(규정 제 4 조 (a)항 (ii)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전환되기 전에 신청인은 먼저 도메인 이름에 관해서 피신청인이 권리와 정당한 이익이 없음을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입증-a prima facie case-를 해야 한다.)AOL LLC v. Gerberg, NAF Claim No. FA 780200(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것을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입증-a prima facie case-를 해야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은 가벼운 것이다. 신청인이 그런 정도의 입증을 충족하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신청인의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없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으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한 어떠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도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신청인이 반증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되는 정도의 소명과 입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a prima facie case).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분쟁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갑제 3 호증 및 제 9 호증의 1, 2 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이하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U+ 유프러스카, UPLUS-CAR 를 이단 병기 형태로 구성된 표장 (이하 ‘피신청인의 사용 표장’)을 그 좌측 상단에 현저하게 표시하고 중고자동차관련 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 네이버 검색광고서비스인 “파워링크”와 다음 광고검색서비스인 “프리미엄링크”에 각 분쟁 도메인이름과 동일한 상호를 게재하여 인터넷상의 이용자들을 이 사건 웹사이트로 유인한 사실, 이 사건 웹사이트 내에서도 신청인의 상호 및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신청인의 서비스와 혼동을 야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 제 4 조 (a)(iii), (b)(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인터넷 사용자는 지명도가 높은 신청인의 상호가 포함된 분쟁 도메인이름을 보고 분쟁 도메인 이름으로 개설한 웹 사이트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의 것으로 오인하고 해당 웹 사이트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바, 이런 방법으로 인터넷 사용자를 자신의 웹 사이트로 유도하는 것도 부당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 eBay Inc. v. SGR Enterprises and Joyce Ayers, WIPO Case No. D2001-0259(도메인 이름<ebaylive.com> 및 <ebaystores.com>과 상표 EBAY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해 그 도메인 이름으로 개설한 웹 사이트를 본 인터넷 사용자는 분쟁 도메인 이름이 eBay와 관련한 회사이며, 후원을 받는 것이라고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 SGRandAyers가 EBAY라는 명칭을 왜 분쟁 도메인 이름의 구성 요소로 채용했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eBay의 신용에 편승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 <upluscar.com>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

단독 행정패널

남호현

결정일: 2015년 8월 25일